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62

발의연월일: 2020. 7. 16.

발 의 자: 장철민・이상직・한병도

김남국 • 윤미향 • 황운하

김수흥 · 이상민 · 임오경

진선미 · 김영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공무원법」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,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·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 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등에 따라 복권될 수 있음에도 임원의 면책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, 모든 종류의 범

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각각 당연퇴직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서, 임원에게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당연퇴직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.

따라서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「국가공무원법」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되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그 밖에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사업의 변동을 법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·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 법률 제 호

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"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중 "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자원순환기본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"비점오염원 관리"를 "비점오염원 관리·물순환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<u>다음</u>	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<u>「공</u>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	제34조제1항
1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	<u><삭 제></u>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<u>사람</u>	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	<u><삭 제></u>
법률」제22조제1항, 제31조제	
<u>6항, 제35조제2항⋅제3항, 제3</u>	
6조제2항 및 제48조제7항에	
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	
나지 아니한 사람	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	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
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	관한 법률」 제34조제2항 각 호
할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	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히 퇴임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사업) ① 공단은 다음 각	제17조(사업) ①
호의 사업을 한다.	
1. 환경오염방지·환경개선 및	1

자원순환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, 개발 및지원

- 2.~9. (생략)
- 10.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·생태복원, 비점오염원 관리 및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
 11.~25. (생략)

②・③ (생 략)

「자원순환기본법」
2.~9. (현행과 같음)
10
<u>비점오염원</u> 관리·물
<u> 순환</u>
11.~25.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